##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 펀드명 : 트러스톤 매크로채권전략 증권투자신탁[채권]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자본시장법 및 시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행령 개정사항 반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영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
	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u>으로</u> 그	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u>을 <b>한도로</b></u>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	<u>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행령 개정사항 반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	제8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
	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u>로 <b>하며</b>, 금융</u>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	제23조(판매가격)	제23조(판매가격)
행령 개정사항 반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영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
	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 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 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한다. 로 하다. 자본시장법 및 시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행령 개정사항 반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옂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 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 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 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 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 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 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 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 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 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17시 경과 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수익자에 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 행령 개정사항 반 경) 경) 영 ① ~ ④(생 략) ① ~ ④(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 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 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 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 재산에서 인출한다. 산에서 인출한다.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⑥(생 략) ⑥(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행령 개정사항 반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영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2.(생 략)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 ⑥(생략)

## 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

##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 7. (생략)
  -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 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

보고하여야 한다.

- 1. ~ 2.(현행과 같음)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 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 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 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 ⑥(현행과 같음)

##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 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 7. (현행과 같음)
  -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법 시행 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	<신 설>	부 최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9월 22
	② ~ ⑩(생 략)	② ~ ⑩(현행과 같음)
	10.(생 략)	10.(현행과 같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
	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